



	보 도 자 료			
	보도	2016. 8. 24.(수) 조간	배포	2016. 8. 23.(화)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3145-7580), 박봉호 팀장(3145-7616)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정은윤 본부장(2003-9014), 이도연 부장(2003-9370)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	최성현 본부장(2087-7008), 김춘 팀장(2087-715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김종선 본부장(368-4505), 양선우 팀장(368-4570)	

제 목 :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10 추진실적
 -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
 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 IR·조사분석시 상장회사·애널리스트·증권회사 준수사항
- ◆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도모
- ◆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 프로세스 마련

1 제정 배경

그간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정보취득 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갈등사례가 발생하여 왔음

일부 상장사의 경우 분석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 일부 애널리스트의 경우 분석의 객관성을 준수하지 못하여 상장사와 갈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는 상장사 애널리스트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 월부터 약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 을 제정하게 되었음

한편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은 본 강령의 제정 목표를 확인하고 강령 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4자간 협의체’ 임원 간담회 개요>

- ☐ 일 시 : '16.8.23.(화) 10:30 ~ 11:30
-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904호)
- ☐ 참석자
 -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 상장회사협의회 김진규 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 김원식 상근부회장, 금융투자협회 정은운 자율규제본부장

2 제정 목표

(제정목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간의 갈등을 개선하기로 약속하고 감독당국을 포함한 협의
체가 양 당사자간의 갈등조정 역할 수행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강령제정의 배경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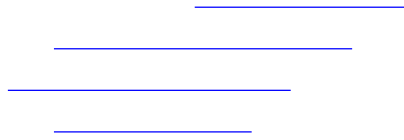
3 주요 내용

본 강령은 크게 상장사 애널리스트 준수사항 자간 협의체 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 를 통한 갈등 조정 프로세스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함

- ① **(상장사의 의무)**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상장사의 수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한편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함
- ② **(애널리스트의 의무)**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하여 애널리스트 전문성 제고를 강조
- ③ **(증권사의 의무)** 증권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함
- ④ **(상호이해와 협력)** 정보취득 제공과정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을 구체화하고 자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로 함
- ⑤ **(갈등조정)** 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갈등 당사자의 입장 청취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함

4 공표 · 게시

동 보도자료를 통해 강령 제정 사실을 공표하고 한국상장
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5 향후 계획

자간 협의체 를 통해 건전한 리서치 문화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본 강령상의 갈등조정 프로
세스를 통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함으로써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 금융감독원

“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전 문]

상장회사 애널리스트 증권회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사분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제1장 상장회사의 의무

1.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애널리스트의 정당한 기업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

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정보 제공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 애널리스트 공정 대우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애널리스트의 견해 및 조사분석자료의 내용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정보접근 기회를 차단하지 아니한다

3.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애널리스트의 의무

1.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준수

소속 증권회사 분석대상 기업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분석 업무의 공정성 준수

조사분석 업무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수령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자료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대상 기업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분석대상 기업을 차별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3.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성 제고

조사분석자료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하여야 하며 조사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증권사의 의무

1.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보호

애널리스트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 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기업금융 업무에 따른 성과 등을 근거로 애널리스트를 보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기 전에는 기업금융 관련 부서 또는 대상법인에게 미리 열람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분석자료의 준법성 제고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관계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해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최초 공표 후 조사분석 자료가 수정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상호이해와 협력

1. 정보의 취득 및 제공

애널리스트는 탐방 대상 기업에게 참석자 및 목적 등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기업은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애널리스트의 요청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기업은 미공개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정 요구

기업은 애널리스트의 판단 및 견해가 자사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기공표된 조사분석자료에 수치 및 인용자료의 중대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는 의 수정요구에 대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수정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호간의 이해 도모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직원으로 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정착 기업과 애널리스트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갈등 조정

1. 갈등조정 기구

상장회사와 애널리스트 간에 조사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한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각 인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 인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 인 상장회사 담당 임원 인 학계 법조계 종사자 인 등 총 인으로 구성한다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 중 리서치센터장 인 상장회사 담당 임원 인은 갈등 조정 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정하며 학계 법조계 종사자 인은 자간 협의체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갈등조정 대상

갈등조정 대상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상장회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정보제공 거절행위
미공개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 등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애널리스트의 견해 및 조사분석자료의 내용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에 대해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조사분석 업무의 대가로 애널리스트 증권회사가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특정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수치 및 인용자료 등 객관적 근거의 중대한 오류에 대한 상장회사의 수정 요청에 애널리스트가 응하지 않는 행위
기타 에 준하는 행위

3. 갈등조정 절차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분기 개최되는 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 예 언론보도사항 법규의 중대한 위반 등 이 발생한 경우 자간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수시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갈등 발생 상장회사 증권회사가 동 강령의 별지 서식에 따른 갈등조정 신청서를 각 협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진행한다

조정 신청은 양 갈등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필요하나 중대한 사안 예 언론보도사항 법규의 중대한 위반 등 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부의 가능하다 이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갈등 조정을 위한 회의는 미리 각 협회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된 양 갈등 당사자의 의견 및 양 갈등 당사자가 갈등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을 토대로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토론을 통하여 진행한다

갈등 조정 방안의 도출은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 인의 전원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의가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 인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갈등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회의 종료 이후 영업일 이내에 양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통지한다

4. 갈등조정결과의 공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갈등조정 결과는 자간 협의체 명의로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